

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5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「평창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」중 전시판매장 위치를 현행화하여 전시판매장 운영·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전시판매장 위치 추가(안 제2조)

- 1) 1개소 → 2개소
- 2) 평창군 전시판매장 현황

구 분	주소	운영주체	비고
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	용평면 탐거리길 63	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	추가
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	대관령면 대관령로 81	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	기존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 : 2024. 8. 12. ~ 2024. 9. 1.(21일간)

- 평창군 공고 제2024-1180호, 농산물유통과-10330(2024. 8. 12.)호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[기획예산과-2255(2024. 8. 5.)호]

3)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 [기획예산과-2255(2024. 8. 5.)호]

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가족복지과-5706(2024. 8. 12.)호]

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예산과-4393(2024. 9. 13.)호]

6)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[기획예산과-4934(2024. 9. 26.)호]

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전시판매장(이하 “전시판매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전시판매장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위치)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(이하 “전시판매장”이라 한다)의 위치는 별표와 같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평창군 전시판매장 현황

구 분	주소	운영주체
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	용평면 탐거리길 63	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
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	대관령면 대관령로 81	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내에서 생산되는 농·축·수·임산물 및 특산품과 그 제품 등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 농민과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평창군 농특산품 <u>전시판매장</u>(이하 “<u>전시판매장</u>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전시판매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2조(위치) <u>전시판매장은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로 81에 둔다.</u></p>	<p>제2조(위치) <u>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(이하 “전시판매장”이라 한다)의 위치는 별표와 같다.</u></p>

관계법령 발취

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1. 12. 30.]

제9조(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)

-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,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·개설·운영, 판로개척, 컨설팅,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을 할 수 있다.
- ④ 정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및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, 실적 등을 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평가 반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본 의안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)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
연락처	033-330-1372